

##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속보고서

1.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에 관한 제4차 정기보고서에 대해 2017년 9월 20일·21일 양일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건설적 대화를 가졌다. 위원회는 심의 후 10월 6일 위원회의 최종견해(E/C.12/KOR/CO/4)를 공식 발표하였다.
2. 위원회는 최종견해 제74항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최종견해 제18(a)항(기업과 인권), 제23항(차별금지법), 제41항(노동조합 권리)의 권고 이행에 관한 정보를 18개월 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권고 이행 상황에 관한 본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 권고 제18(a)항 이행에 관한 정보

3. 정부는 2018년 8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발간하면서 기업과 인권을 다루는 장을 별도로 편성하였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정부 각 부처의 인권 분야 정책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새로 도입된 장에 기업과 인권 관련 정책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확보,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생활제품 소비자 안전 확보 등이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확정되었다.
4. 정부는 현재 이러한 정책과제를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법무부는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인권규범을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인권경영 표준지침’을 개발하는 중이다. 이 지침에는 인권경영위원회 설립,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실천점검의무(due diligence) 관련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2017년 12월 「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공공조달에서의 인센티브 부여 등 기업들의 인권경영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5. 정부는 기업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하

고 기업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고충처리 절차 및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성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의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신속한 구제수단을 제공하고 이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의 재발을 막고자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다수 피해자들이 손쉽게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증권 분야에 한정하여 도입된 집단소송제도를 소비자 피해 분야에도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6. 정부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인권경영 여부를 점검하기로 결정하였다. 법무부 등 정부부처들은 산하 공공기관의 2019년 경영실적(2020년 평가 시행)부터 인권경영 항목을 신설한 경영평가 지표를 활용해 평가할 계획이다. 경영평가항목에는 인권경영 실천점검 의무(due diligence)의 핵심인 인권영향평가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860개 공공기관도 인권경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경영 선언, 인권경영 위원회 구성, 인권영향평가 등을 추진 또는 계획하기로 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에서 인권경영 지표를 신설하여 2019년 실적(2020년 평가 시행)부터 적용하겠다고 공표함에 따라 114개 지방공기업 직영기업도 인권경영을 실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의 조치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인권경영 항목을 신설 및 확대할 것과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하여 인권경영을 실행할 것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권고 제23항 이행에 관한 정보**

7. 정부는 2018년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제2부 제2장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에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를 정책과제로 포함하고, 차별금지에 따른 편익과 사회·경제적 부담이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효과적 차별 피해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차별 관련 해외 입법례를 연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8. 정부는 차별금지 법제정비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위원회가 일반논평 제20호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2018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과거 축소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차별시정국’을 신설하고 차별시정 인력을 증원하도록 하였다. 신설된 차별시정국은 진정사건을 조사 및 검토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차별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9.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과 90여개의 개별 법률을 통해 규약 상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공식적 및 실질적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각 법률의 개정 및 입법을 추진 중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기존에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2019년 개정을 통해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까지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남성과 여성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영역별 성차별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해 주요 부처의 성평등 전담 기능 강화를 추진중이다. 정부는 또, 법무부 장관이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 내리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성별, 출신지역, 학력 등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를 다룬 법률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 권고 제41항 이행에 관한 정보

###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10. 정부는 복수 노동조합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에게 대한 교섭 요구시 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교섭대표노조 및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는 2017년 27건, 2018년 52건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1. 정부는 또한 사용자가 노조를 차별함으로써 노동자의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2월 그간의 수사관행 및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수사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현재 담당자에게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단결권 보장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자의적 개입 방지*

12.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은 노동자 및 공무원·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해고자, 실업자 등 일부 노동자 및 공무원의 경우 부분적으로 단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그러나, 현재 ILO 협약 비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조활동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다.

###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13. ILO 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비준 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바,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협약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국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7년 ILO 협약 비준을 위한 전문가 논의를 개최했으며, 2018년 7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하여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2018년 11월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 인정,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위원안을 제시했다. 현재 이를 토대로 노조법 개정안,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정부는 향후 노사정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을 먼저 추진하고, 법 개정 추이에 따라 협약 비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